

의안번호	2211025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5.
추계번호	25A3394
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·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12·3비상계업 피해지원금의 지급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2·3비상계업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지원금의 우선 지급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의 매출액 감소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에 따른 12·3비상계업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	안 제9조(12·3비상계업 피해지원 심의위원회)	○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12·3비상계업 피해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11조(실태조사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·3비상계업과 관련된 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2조(융자 지원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2·3비상계업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2·3비상계업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 ○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5조(12·3비상계업 피해지원금의 지급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(지원금의 우선 지급)	
3	안 제9조(12·3비상계업 피해지원 심의위원회)	○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4	안 제11조(실태조사)	
5	안 제12조(융자 지원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. 12·3비상계업 피해지원금의 지급(안 제5조) 등

- 안 제5조·제6조·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2·3비상계업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이때 “12·3비상계업”이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업을 말함
 - 제정안은 피해지원금(안 제5조 및 제6조)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융자지원(안 제12조)을 규정하고 있음
- 다만, 제정안의 지원금 규모 등은 안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, 안 제9조에 따른 12·3비상계업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20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 기준으로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8,956,294명, 이 중 소상공인은 10,740,812명 규모임

[표 1] 산업대분류별 중소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수(20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)
(단위: 명)

산업별(10차) 대분류별	중소기업	소상공인
전산업	18,956,294	10,740,812
A. 농업, 임업 및 어업(01~03)	178,431	118,476
B. 광업(05~08)	10,691	4,389
C. 제조업(10~34)	3,411,161	1,284,042
D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35)	150,900	146,166
E. 수도,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36~39)	96,428	17,541
F. 건설업(41~42)	1,920,233	954,309
G. 도매 및 소매업(45~47)	3,746,675	2,696,084
H. 운수 및 창고업(49~52)	1,152,970	751,670
I. 숙박 및 음식점업(55~56)	1,793,548	1,343,746
J. 정보통신업(58~63)	727,748	228,215
K. 금융 및 보험업(64~66)	149,269	69,444
L. 부동산업(68)	1,500,753	1,314,911
M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~73)	1,014,059	416,384
N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74~76)	1,074,149	222,521
P. 교육 서비스업(85)	428,577	330,258
Q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86~87)	723,763	163,533
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~91)	260,025	197,253
S. 협회및단체,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94~96)	616,914	481,870

주: *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2020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('22.7월 공표)와 다름
자료: 통계청

나. 12·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(안 제9조)·실태조사(안 제11조)

□ 안 제9조에 따른 12·3비상계엄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, 안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심의위원회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대상, 기준,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, 실태조사는 12·3비상계엄과 관련된 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말함

□ 다만, 심의위원회와 실태조사 관련 재정소요는 소액으로 추정되며, 한

시적인 경비에 해당하여 동 재정수반요인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
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